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 안호영의원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89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용혜인 · 안호영 · 서왕진
장철민 · 황운하 · 김정호
한창민 · 신장식 · 이해민
백선희 · 차규근 · 강경숙
김준형 · 이주희 · 박정현
민병덕 · 강득구 · 백혜련
송옥주 · 염태영 · 민형배
윤종오 · 양부남 · 이개호
안도걸 · 박희승 · 박지혜
조계원 · 박주민 · 이학영
의원(3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있어,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 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

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 자체가 지체되는 상황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따른 공공자원인 자연력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개발 이익은 특정 자본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함. 실제로 독일·덴마크·영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의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지역사회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해당 사업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세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전환 확대 목표, 자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육성 방안,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합은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소규모전력중개,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민주성·공공성·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계
통 우선 접속 및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우선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서 거주하는 해당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나.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

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소속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3.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이란 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익공유”란 조합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관련 공익 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조정을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위해 행정, 재정,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이용 제고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주민 상호간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
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조합의 지원·육성 방안
4. 조합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5. 조합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6.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7. 그 밖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및 연합회

제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3.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4.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주성 · 공공성 · 공개성의 원칙에 따른 운영 의무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의무
3.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주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의무
4. 조합 간의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의무

제8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복리증진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교육 등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사업의 이용으로 보며, 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위해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합회) 연합회는 관할 업무구역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국연합회: 전국 과반 이상의 시·도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2. 광역연합회: 해당 시·도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3. 시·군·구연합회: 해당 시·군·구에 법인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제10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
2.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사업 및 발전사업
3. 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보수 사업
4. 재생에너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및 다른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7.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8.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9. 회원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10.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용역 사업
11. 전기공사업
12. 전력거래 중개사업
13.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시·군·구연합회 및 광역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 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총회, 이사회 등의 권한을 제외한 일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원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합이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유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 조에서 “임

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임대료의 감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조합에 임대하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금융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조합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격거리)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통연계와 우선구매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하여 접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경영공시에 관한 특례) 조합 및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납입총액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9조의2 및 제82조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에 따른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